

한변, 금성전투 참전용사 및 국군포로 가족회 대리하여 중공군 6·25 미화한 영화 상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는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서에 반하고, 국군과 국군포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일시 : 2021. 9. 9.(목) 13:30

장소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문 앞 기자회견

1. 한변은 금성전투 참전용사와 국군포로가족회 등을 대리하여 내일 9일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배급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및 디브이디 등 판매금지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지난달 말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한국군 5만여명을 섬멸했다”고 기록한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 ‘1953 금성대전투’(원제 ‘금강천’)를 국내에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을 분류했다. 극장 상영이나 IP TV 등 매체 판매를 통한 방영을 허용한 것이다.
3. 그러나 ‘금성 전투’는 시종일관 국군과 중공군이 맞붙어 싸웠다. 국군은 병력 열세로 후퇴해 영토 193km를 적에게 내줬다. 국군 2689명이 전사하고 부상·실종까지 더하면 인적 피해는 1만4373명에 이른다. 중국은 “한국군 피로 물들었다”고 했다. 실제 6.25 최후의 대접전으로서 국토를 한 뼨이라도 지키려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바치고 포로가 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6·25 참전 70주년을 맞아 이 영화를 자국 국민감정 자극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영화비디오법)에 의하면, 영등위는 영화의 상영등급 분류 시 인권존중, 국가정체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참전해 한반도의 통일을 좌절시키고 수많은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잡아간 중공군을 미화한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전투에 참전했던 국군용사와 국군포로 및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5. 이에 한변은 금성전투 참전용사 류재식 선생과 국군포로 가족회(대표 손명화)를 대리하여 이 영화의 상영금지 및 비디오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아무리 민주 사회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우리를 죽이고 짓밟은 중공군을 미화하고 영웅시한 영화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2021. 9.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